

#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## 1. 제안사유

2008. 1. 1 부터 「공무원여비규정(대통령령)」이 개정·시행됨에 따라 우리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를 개정된 내용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임.

## 2. 주요내용

- 구청장에 대한 여비 적용기준 변경 (안 제3조 제1항)
- 국내여비중 운임과 숙박비의 카드결제 준용규정 신설 (안 제5조 제1호)
- 기타 조례운용상 미비점 보완 (안 제5조 제2호~제7호)

## 3. 관계법령

- 지방공무원법 (제46조)
- 공무원여비규정 (제8조2 등)

## 4. 검토의견

### 본 조례개정안은

2007. 11. 13 개정되어 2008 1. 1부터 시행되고 있는 「공무원여비규정」에 맞추어 우리구 관련조례를 전부개정 하려는 것입니다만

총 5개 조문중 「제1조, 제2조, 제4조」는 현행조례의 조문을 그대로 이기하였고, 「제3조와 제5조」가 개정된 부분임.

□ 제3조 제1항의 경우는

구청장에 대한 여비적용기준을 개정된 「공무원여비규정」에 맞추어 개정하였음.

□ 제5조 제1호의 경우는 신설된 조항으로

「공무원여비규정」이 개정되어 2008. 1. 1 부터는 공무상 국내 여행자의 여비중 운임과 숙박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카드결재를 하도록 되어 있어 이와 관련한 준용규정을 신설한 것임.

□ 제5조 제2호~제7호의 경우는

조례상에 준용된 관계법령을 명확하게 하기위해 인용조항 앞에 관계법령명("영")을 추가한 것임.

□ 이상과 같이 본 조례개정안은

대부분의 내용이 「공무원여비규정」의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여도 좋을 것으로 판단됨.

2008. 2. 19.

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박 노 선

## 《 관 계 법 령 》

### 지방공무원법

제46 (실비보상등) ①공무원은 보수를 받는 외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보상을 받을 수 있다.

### 공무원여비규정

제8조의2 (국내여비의 결재와 정산 등) ①국내여행자가 여비 중 운임과 숙박비를 결재하는 때에는 「국고금관리법」 제24조제5항의 정부구매카드(이하 “정부구매카드”라 한다)를 사용하여야 한다. 다만, 출장지에 신용카드 가맹점이 없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②국내여행자는 여행을 완료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주일 이내에 운임과 숙박비의 세부사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회계 관계공무원에게 운임과 숙박비의 정산을 신청하여야 한다.

③제2항의 정산신청을 받은 회계 관계공무원은 여비의 정산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중앙인사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여비의 정산을 실시하여야 한다.

④제1항 단서에 따라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의 운임 및 숙박비의 지급기준,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중앙인사위원회가 정한다.

[본조신설 2007.11.13]